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(법률 제17447호, 2020. 06. 09. 공포, 2020. 12. 10. 시행)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등기)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, 지사,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(법 제23조의 산하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공고의 방법

제3조(출연금의 지급) ① 정부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관리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

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부 외의 자의 출연)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과 단체의 출연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출자 등)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원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
2.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
3.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
4.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자금의 차입)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(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, 수량 및 가격)
2.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
3.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

4.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방법 및 기한

5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채권의 발행) 관리원은 법 제13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·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채권의 형식) 채권은 무기명식(無記名式)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(記名式)으로 할 수 있다.

제9조(채권의 발행방법 등) ①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,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채권의 응모 등)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(券種)·수·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이사장이 작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리원의 명칭

2. 채권의 발행총액
3.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
4. 채권의 이율
5.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
6.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
7.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
8.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
9.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
10.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

제11조(총액인수의 방법)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.

제12조(채권의 발행총액)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.

제13조(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) ① 관리원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.

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.

제14조(채권의 기재사항)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관리원의 명칭
2.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(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
3. 채권의 번호
4. 채권의 발행 연월일

제15조(채권 원부) 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
2. 채권의 발행 연월일
3.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

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
2. 채권의 취득 연월일

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이권 흠결 등) ① 이권(利券)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(欠缺)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7조(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)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(催告)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원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.

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원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.

제18조(보조금) 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제5호 중 “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(이하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5조의2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각각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98조제4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국토안전관리원

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국토안전관리원

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

다.

다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

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

제119조의10제1항 및 제2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각각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

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토안전관리원

제63조제1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”으로 한다.

제95조제8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

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

⑦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4호 중 “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(이하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6장(제32조부터 제34조까지)을 삭제한다.

제43조제2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

⑨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각각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2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

제79조제1항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다.

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

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토안전관리원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- ⑪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

- ⑫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

- 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중 “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
이 영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